

붙임 4 FAQ

NO	질문
1	의료데이터를 가명조치할 경우, 활용가능한 범위?
2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경우 가명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3	가명정보 제공받은 이후에 재제공 또는 일부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4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5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는가?
6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7	가명정보의 제공은 의무사항인지?
8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9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한정할 수 있는가?
10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11	기존 암호화 대상이 된 개인정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암호화 보관 대상인가?
12	가명처리 절차에 따라 반출되어 활용된 가명정보가 재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3	제공받은 데이터의 활용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후)에도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한가?
14	가명 처리된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15	가명처리에 대한 기술적 유보는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16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17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18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적으로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가능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19	본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데이터 유출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지?
20	데이터의 결합과 반출 신청 후 제공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1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가명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Q1 의료데이터를 가명 조치할 경우, 활용 가능한 범위?

* 답 변

- (가명정보 활용범위) 가명정보는 “①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 가지 목적으로 “처리*”가능
 - * 처리 :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등
- (과학적 연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Q2 희귀질환 대상의 연구를 할 경우 가명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가?

* 답 변

- 재식별이 될 경우 행위자 처벌과는 무관하게, 정보주체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아래의 정보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신질환 및 처방약 정보
-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성매개감염병 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 정보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정보
- 학대 및 낙태 관련 정보 (질병분류코드 기준으로 T74, O04 그 외 의료진 판단 활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를 특별히 가명처리하여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사유와 정보인권을 보호할 특별한 보호조치* 등을 보고한 뒤 승인을 얻어 활용할 수 있음

- * (예시) 원 개인정보처리자 내 분석공간 활용 등
- * 처리 목적, 처리자, 연구방법, 특별보호조치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Q3 가명정보 제공받은 이후에 재제공 또는 일부 가공 후 재제공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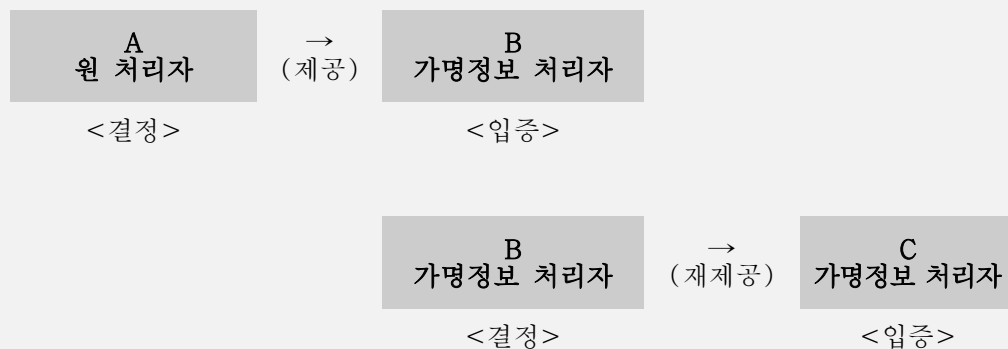
* 답 변

- 개인정보처리자(A)는 가명정보를 제3자(B)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명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 개인정보의 처리자(C)와 협의를 거쳐(또는 계약에 따라 승인을 받아), 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정보의 내용, B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가명 정보의 일부분 가공 후 재제공은 가능하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Q4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 답 변

-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 가명정보를 재제공할 경우, 재제공하는 자가 결정



Q5 “과학적 연구”에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는가?

* 답 변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Q6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는지?

* 답 변

- 가명정보는 법률 상 개인정보에 속하지만 동의가 면제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일반 개인정보에 비해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가명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 관련 각종 안전장치 및 절차가 모두 적용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Q7 가명정보의 제공은 의무사항인지?

* 답 변

- 가명정보의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 범위에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편리하고 보편적인 이용·활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공공데이터법*”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필요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후략)

Q8 재식별 관련 오남용 예방장치는?

* 답 변

- 가명정보와 그 밖에 모든 정보*를 상호 분리**된 시스템 내 공간에 두는 것을 권장
 - *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 제3의 경로로 입수한 다른 가명정보,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등을 총칭
 - ** (상호 분리) 정보시스템 내에 설정된 가상의 공간을 의미함.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으나, 경계선을 넘어 정보를 이관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함
- 공간 간 경계선을 넘는 정보 이동*은 내부 관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승인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
 - * (경계선을 넘는 정보 이동) 가명정보 공간으로의 기타 정보의 반입, 기타 정보 공간으로의 가명정보의 반출, 가명 정보 공간 간의 가명정보 이동 등
-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 처리중지·회수·파기, 위반 시 과징금 등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Q9 가명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한정할 수 있는가?

* 답 변

- 가명정보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원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과학적 연구 등’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 제공하지 않을 권리는 있음

Q10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재)식별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답 변

- ‘식별가능’ 여부는 배경지식*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달라지고, 실제로 식별되기 전까지는 식별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어려움
 - *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 외에 보유한 모든 정보
- 따라서 ‘식별가능성’의 수준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가명정보를 입수하는 사람 또는 가명정보가 처리되는 환경이 접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적절하게 통제하였는지, 식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충실히 삭제·배제하고, 식별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충실히 다하였는지 등을 평가함으로써 식별가능성이 적절하게 관리·최소화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적절함
 - * 관계 법령 및 본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른 조치·절차

Q11 기존 암호화 대상이 된 개인정보 중에 가명 처리된 가명정보는 암호화 보관 대상인가?

* 답 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라 가명정보는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중략)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략)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Q12 가명처리 절차에 따라 반출되어 활용된 가명정보가 재식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답 변

- 개인정보처리자(A)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외부(B)에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A, B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권장함
* 활용목적, 활용방법, 보호방법, 재제공가능여부, 대가,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등
- 정해진 활용목적 이외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자가 처벌받음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Q13 제공받은 데이터의 활용이 끝난 후(처리목적 달성후)에도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외적으로 보관이 가능한가?

*** 답 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가명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명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할 것을 권장

Q14 가명 처리된 정보의 철회 요구는 가능한가?

*** 답 변**

-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재식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명정보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처리정지를 거절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함

Q15 가명처리에 대한 기술적 유보는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 답 변**

- 기술적 유보가 필요한 해당 속성 정보만을 삭제하고 이용 가능

Q16 본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과의 관계는?

*** 답 변**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처리’는 생명윤리법의 ‘익명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목적으로 수집된 의료데이터 등을 개보법 상의 가명처리를 통해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간주하고 기관 차원에서 가명처리가 확인된 경우 IRB 심의 및 동의를 면제할 수 있음

Q17 타법(의료법, 생명윤리법)에 의해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 답 변**

-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료법), 인간대상연구(생명윤리법)는 해당법을 따르며,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Q18 가명처리 가능 여부가 유보되었지만, 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적으로 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가능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 변**

-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방식 이외의 신기술 등 다른 방법 및 이를 채용한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를 할 경우, 적절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은 뒤 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실시
- *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평가 보고서는 해당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널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공개되어야 함

Q19 본 가이드라인의 안전·보호조치를 성실히 따랐지만, 악의적인 해커의 공격으로 데이터 유출 또는 재식별이 될 경우 제공기관은 면책이 가능한가?

*** 답 변**

- 본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절차 및 거버넌스, 안전조치, 윤리적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한편 처리자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면책의 여부가 결정됨

Q20 데이터의 결합과 반출 신청 후 제공까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답 변**

- 결합하고자 데이터 양, 유형 등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이하며, 비용의 경우 데이터 결합 및 반출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 데이터 처리 등에 따른 실비 수준 책정

Q21 다른 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게 되어서 가명 정보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답 변**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인수되거나 합병될 경우 가명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인수기업이 의무를 승계하도록 정할 것을 권장
- 재식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배상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을 양도 조건에 담을 것을 권장